

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(제7조제4항  
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

다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화훼문화의 진흥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해당 전담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처분기준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회 위반 | 2회 위반        | 3회 이상 위반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| 법 제11조 제3항제1호 | 지정 취소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나.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       | 법 제11조 제3항제2호 | 경고    | 업무 정지<br>3개월 | 지정 취소    |
| 다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않 | 법 제11조 제3항제3호 | 경고    | 지정 취소        |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 라.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| 법 제11조 제3항제4호 | 경고 | 업무 정지<br>3개월 | 지정 취소 |